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359 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출연월일	2017. . .

1. 의안명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의회운영에 있어 그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총선거 직후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임시의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심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64조)
-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63조의2)
- 의정활동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8조의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참고사항: 시·도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1214(2017.4.11.). 2123(2017.7.7.)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 순서”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8조에 의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를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로 한다.

제21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의 선거

제21조제2항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4조제1항 중 “서면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 시행에 긴급이 요구될 때”를 “긴급한 경우”로 한다.

제72조의2 중 “제68조 내지”를 “제68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79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회의장内外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장에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4(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 ·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도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회의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9조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83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제9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접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

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될 때에는 그 의장이나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 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생략)

<신 설>

<신 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8조에 의한다.

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할 수 있다.

②(생략)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의 선거

2. ~ 4. (생략)

5.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

6. ~ 13. (생략)

③ ~ ⑥ (생략)

<신 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 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8조에 의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

②(현행과 같음)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의 선거

2. ~ 4. (현행과 같음)

5.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

6. ~ 1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 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p><u>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u>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p>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u>서면으로</u>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u>인쇄하여</u>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u>그 시행에 긴급이 요구될 때에는</u>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u>제68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후단 신설>
제77조(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와 답변) ①	의장은 <u>법 제79조에 따라</u>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
	<p><u>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u>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p>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 ----- ----- <u>서면 또는 전자문서</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u> -- -. ----- <u>긴급한 경우</u> ----- -.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①	-- ----- <u>제68조부터</u> -- -----.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77조(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와 답변) ①	----- <u>법 제79조제1항</u> -----

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자격심사 대상의원에게 답변 기일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 한 자
2. 술기운이 있는 자
3.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자
4.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자
5. 그 밖에 회의장内外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정활동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 ③ (생 략)

<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
----- 사
람에게-----.

1. -----
- 사람
2. ----- 사람
3. -----

-- 사람
4. -----

-- 사람

5.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회의장内外의 질서유지에 방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
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의4(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도정 질문 현황

6. 그 밖에 회의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
----- 법

제83조제2항-----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 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징계 사 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 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